- 2025년도 디자인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2025년도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적인 리사이클 디자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3월 10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리사이클디자인 상품 개발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의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 지역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컨설팅·디자인 개발 등 친환경 디자인 활동을 장려하여 리사이클 상품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 (지원규모)

- 10개 과제 이내, 상품 개발비 최대 3,000만원(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품개발 최종 평가 후, 우수 과제는 브랜딩 개발 사업비 추가지원 ※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 수의 2배수 선정(접수기업 2배수 미달 시 전체 발표 평가 대상)

- o (지원조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과제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
 - 지원금의 20% 이상 수요기업 부담금 필수
 -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아님
 - ※ 특허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금 회계정산 수수료 예산편성 필수
 - ※ 컨소시엄 참여시, 지원금은 디자인 수행기업에게 지급, 수요기업은 결과물 수령
- ㅇ (지원내용) 리사이클 상품 개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사업추진일정)



※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ㅇ (신청자격) 디자인 개발 수요가 있는 리사이클 관련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 자체 디자인 개발 가능한 기업(수요기업이자 수행기업)
 - 소재, 제조 기업(수요기업)등과 디자인 기업(디자인 수행기업)의 컨소시엄(협업)
 - ※ 개발 종료 시점에 리사이클 상품 출시 가능해야 함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 사업」참여 기업은 당시 지원 과제와 다른 과제 공모 시 지원 가능
- o (지원분야) 리사이클 상품 개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과제(예)
 - ① 리사이클 상품 개발
- 리사이클 소재 활용 상품 개발
- 새로운 소재, 상품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IP 확보
- 상품화 가능한 상품 개발
- ② 지역기업 홍보물, 기념품 제작
- 지역 내 리사이클 소재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 기념품 제작 (예) OO은행- 은행 내방 고객용 동전 지갑
- 새로운 소재, 상품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IP 확보
- ③ 리사이클 키트 제작
- 리사이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키트 제작
- 새로운 소재, 상품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IP 확보 - 상품화 및 활용 방향 제안 가능한 상품 개발
- (지원제외)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시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지능 정보 기술 융합 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 사업 中 1개 사업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 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 (평가일정)
 - 발표평가 대상자 발표 : 2025. 4. 4.(금)
 - 발표평가 일정 : 2025. 4. 8.(화)
 - 최종선정 발표 : 개별 연락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결과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확정 일정 필히 참고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100%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결과 구분
정량적 평가 (15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건당 1점, 최대 3점) ※ 자원 재활용 및 재생소재 관련 기술 등		3	
	공인 공모전 수상	• 국내(건당 1점, 최대 2점)	2	
		• 국외(건당 1점, 최대 2점)	2	
	부산 지역 리사이클 소재 활용 (커피찌꺼기, 폐어망, 부산 기업 개발 리사이클 소재 등)		3	평가점수 60점 이상: 선정
	상품 수요 기업의 구매 계약서 또는 구매 동의서 보유*		5	평가점수 60점
정성적 평가 (85점)	• 개발내용 및 방법		20	미만: 탈락
	• 개발계획 타당성		25	
	• 기대효과		2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컨소시엄 참여시, 수요 및 디자인 수행기업의 내역 합계로 반영 (예: 지식재산권 보유 수요기업 1개, 디자인 수행기업 1개 → 2점)

* 구매 계약서 및 구매 동의서 가점 상세 내용

- 구매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기업
 -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까지 지원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요처 기준
 - 1) 국내수요처
 - ①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 ③ 기타부문: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2)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및 현지 등록 기관 및 단체 등
- (선정기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등 5인 이상 구성
 - ※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1인) 및 최저점수(1인)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

○ (추진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	참여기업 → 부산디자인진흥원	′25. 3. 10. ~ 31.
—		
서류 검토 및 평가	부산디자인진흥원	'25.4월 중
•		
대상자 발표	부산디자인진흥원	'25.4월 중
•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25.4월 중
1		
협약	부산디자인진흥원 ↔ 선정기업	'25.4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일정 필히 확인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 3. 10.(월) ~ 31.(월) 14:00까지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유의사항		
공통	[서식1]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pdf/한글 모두 제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서식4] 특별이행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 시	- pdf 제출		
	[서식5]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 필수			
	직전년도 총매출 증빙(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해당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지원서 내 작성된	- pdf 제출 - 증빙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 ㅇㅇ 미세호 시 호이크이 ᆻ할 ㅜ ᆻㅠ		

- ▶ 파일명 예시: (사업지원서) 기업명
 - 예) (참가 신청서) 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계획서) 부산디자인진흥원
- ▷ 유의사항 엄수하여 제출, 서명 등 기입란 필수 입력
- ▷ 선정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요청 가능

- o (제출방법)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yr.kim@dcb.or.kr
- (문의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051-790-1034, yr.kim@dcb.or.kr)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2025. 3. 14.(금) 14:00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CMF실

5. 기타사항 및 의무사항

- ㅇ (기타사항)
 - 사업 완료 후(종료 시점)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일 것
 - 제품개발·개선 및 기업혁신(매출증대, 신상품 출시,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이 가능한 과제일 것
 - 모든 시업 수행과정 현장점검 및 중간·최종보고 결과 시업 이행률 미비 또는 목표 성과달성 불가 판단 시, 기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지원비 미지급 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내 사업 중복지워 및 수혜 불가
 - 공모 심사 결과 적격한 지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은 재공고 또는 미 선정 처리 가능
 -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시 선정평가는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완료 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원자(사)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한 과제는 수요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등 참여기업 및 참여인력에 의해 수행된 적이 없어야 하며,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사항)

-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 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 수시 및 최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모든 사업 최종평가 시 실물 목업(Mockup) 및 포트폴리오용 고화질 이미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자문을 통한 지식 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 지원금의 20% 이상 수요기업이 필수로 부담해야 함

【붙임】

- [서식1]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 [서식4] 특별이행각서 1부
- [서식5]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